

# 조 정 조 서

사 건

대여금

원 고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유 담당변호사 조효동

피 고

판 사

조 정 위 원

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유 담당변호사 조효동

출석

피고

출석

다음과 같이 조정성립

## 조 정 조 항

1. 피고는 원고에게 92,000,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37회 분할하여 2023. 6. 28. 20,000,000원,

2023. 9월부터 2026. 8월까지(36개월 동안) 매월 말일에 2,000,000원씩을 각 지급한다.

만일 피고가 위 분할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즉시 분할상환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때까지의 미지급액 전액에 위약금 20,000,000원을 합한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지체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.

2.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.

3.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